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4.26. 공포)됨에 따라,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동물 생산업의 번식 목적건 동물 등록 의무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확대, 동물 영업장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 확대, 보호비용 면제 신설 등

2.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안 제4조 제3호 신설)

- 1) (제·개정 주요내용)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동물생산업 영업장의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추가
- 2) (제·개정 사유)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영업, 동물학대 등 개선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나.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5조 제9호 신설)

-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추가
- 2) (제·개정 사유) 동물실험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실험의 원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다. 동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유 추가(안 제11조 제10호 신설)

- 1) (제·개정 주요내용) 무선식별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유 추가
- 2) (제·개정 사유) 고장 등의 사유로 무선식별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행정기관에서 변경 사항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 등록대상동물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신고 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 확대(안 제26조의 별표 3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등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 장소 추가

* (판매업) 사육실, 격리실, (생산업)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 (수입업) 사육실, 격리실,
(전시업) 전시실, 휴식실 추가

2) (제·개정 사유) 동물 관련 영업장 내의 학대 행위 예방 및 학대
발생 시 근거자료 수집을 위하여 설치 의무장소를 추가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동물생산업 영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개

제5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제11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무선식별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별표 3 제1호라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 운영자: 하차대, 계류장, 기절시설
설 통로, 방혈대

별표 3 제1호라목1) 및 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목(종전의 마목)에 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동물전시업: 전시실, 휴식실

마.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 1) 동물판매업 : 사육실, 격리실, 경매실, 준비실
- 2) 동물장묘업: 화장(火葬)시설 등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의 처리
시설
- 3) 동물생산업: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
- 4) 동물수입업: 사육실, 격리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 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2. (생 략) <u><신 설></u>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동물 생산업 영업장에서 번식 목적 으로 기르는 개</u>
제5조(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 는 기관으로서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법인·단 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 8. (생 략) <u><신 설></u>	제5조(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 ----- ----- ----- ----- ----- -----. 1. ~ 8. (현행과 같음) 9. <u>「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 관</u>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9. (생략)

<신설>

② ~ ⑧ (생략)

[별표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대상, 장소 및 관리기준 (제26조 관련)

1. 설치 대상 및 장소

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보호실 및 격리실
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보호실 및 격리실
다. 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 보호실 및 격리실

라.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1) 동물판매업(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동물판매업으로 한정한다): 경매실,

-----.

1. ~ 9. (현행과 같음)

10. 무선식별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② ~ ⑧ (현행과 같음)

[별표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대상, 장소 및 관리기준 (제26조 관련)

1. 설치 대상 및 장소

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보호실 및 격리실
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보호실 및 격리실
다. 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 보호실 및 격리실

라.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 운영자: 하차대, 계류장, 기절시설 통로, 방혈대

마.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1) 동물판매업 : 사육실, 격리실, 경매실, 준비실

준비실

2) 동물장묘업: 화장(火葬)시설 등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의 처리시설

마.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 1) 동물위탁관리업: 위탁관리실
- 2) 동물미용업: 미용작업실
- 3) 동물운송업: 차량 내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

2. 관리기준

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동물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나.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가 고장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2) 동물장묘업: 화장(火葬)시설 등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의 처리시설

3) 동물생산업: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

4) 동물수입업: 사육실, 격리실

바.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 1) 동물위탁관리업: 위탁관리실
- 2) 동물미용업: 미용작업실
- 3) 동물운송업: 차량 내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

4) 동물전시업: 전시실, 휴식실

2. 관리기준

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동물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나.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가 고장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안내판 설치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마. 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현황을 추가적으로 알리기 위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	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안내판 설치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마. 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현황을 추가적으로 알리기 위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
---	---